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·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,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8명(4급 또는 5급 6명, 5급 2명)의 직급을 5급 8명으로,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(9급 1명)을 전문경력관 1명(전문경력관 다군 1명)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평생교육국”을 “평생직업교육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평생교육”을 “평생직업교육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제45호 중 “정책 및 직업교육”을 “정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7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54호의2 및 제5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5호부터 제5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54의2.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·총괄

54의3.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
제11조제3항에 제31호의2부터 제3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1의2. 초·중등학교 과학·수학·정보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·시행

31의3.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·시행

31의4.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

제13조의2의 제목 “(평생교육국)”을 “(평생직업교육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생교육국”을 “평생직업교육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13조의2제3항에 제14호의2부

터 제1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
14의3.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

14의4.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·시행 및 관련 법령·제도 개선

14의5.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제도 개선

14의6.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

14의7.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

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사위원회는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, 상임위원은 1명을 둔다.

제3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행정안전부, 1명(5급 1명)은 문화체육관광부, 1명(5급 1명)은 보건복지부, 2명(5급 2명)은 고용노동부, 1명(5급 1명)은 여성가족부, 1명(5급 1명)은 중소벤처기업부, 1명(5급 1명)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

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“526”을 “525”로 하고, 전문경력관 “2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(생략)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 · 고등교육정책실 · 학교혁신지원실 · 교육복지정책국 · 학생지원국 · 평생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을 둔다. ③ (생략)	제4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평생직업교육국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차관보) ① (생략)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. 1. (생략) 2. <u>평생교육</u>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. (생략)	제4조의2(차관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평생직업교육</u> ----- -- 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 · 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4. (생략) 45.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및 <u>직업교육</u>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 46. (생략)	제10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44. (현행과 같음) 45. ----- 정책 ----- ----- -- 46. (현행과 같음)

47. <u>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 · 시행</u> 48. ~ 5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5. <u>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· 시행 및 관련 법령 · 제도 개선</u> 56. <u>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 · 시행 및 제도 개선</u> 57. <u>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</u> 58. <u>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· 시행</u> 59. ~ 64. (생략) 제11조(학교혁신지원실) ① · 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1. (생략)	<u><삭제></u> 48. ~ 54. (현행과 같음) <u>54의2.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· 총괄</u> <u>54의3.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59. ~ 64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학교혁신지원실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31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u><신 설></u>	<u>31의2. 초·중등학교 과학·수</u>
	<u>학·정보교육 및 융합인재교</u>
	<u>육 기본정책의 수립·시행</u>
<u><신 설></u>	<u>31의3.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</u>
	<u>의 수립·시행</u>
<u><신 설></u>	<u>31의4.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</u>
	<u>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</u>
	<u>지원</u>
32. ~ 48. (생 략)	32. ~ 48.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2(평생교육국) ① <u>평생교</u>	제13조의2(평생직업교육국) ① <u>평</u>
<u>육국</u> 에 국장 1명을 둔다.	<u>생직업교육국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	③ -----
다.	--.
1. 학 제	<u><학 제></u>
2.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·총괄	<u><학 제></u>
3.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	
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	
지원	<u><학 제></u>
4. 초·중등학교 과학·수학·	<u><학 제></u>
정보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	
본정책의 수립·시행	
5.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	<u><학 제></u>
립·시행	
6.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	<u><학 제></u>
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	

7. ~ 14. (생 략)	7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의2.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</u>
	<u>립·시행</u>
<u><신 설></u>	<u>14의3.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</u>
	<u>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</u>
	<u>수립계획의 수립·시행</u>
<u><신 설></u>	<u>14의4.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</u>
	<u>정책의 수립·시행 및 관련</u>
	<u>법령·제도 개선</u>
<u><신 설></u>	<u>14의5.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</u>
	<u>책의 수립·시행 및 제도 개</u>
	<u>선</u>
<u><신 설></u>	<u>14의6.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</u>
	<u>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14의7.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</u>
	<u>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</u>
	<u>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</u>
	<u>·시행</u>
15. ~ 25. (생 략)	15. ~ 25.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구성) ① <u>심사위원회는 위</u>	제32조(구성) ① <u>심사위원회는</u>
<u>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</u>	<u>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</u>
<u>합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</u>	<u>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</u>
<u>으로 구성한다.</u>	<u>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, 상임위</u>
	<u>원은 1명을 둔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7조(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	제37조(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526	525	-1
전문경력관	2	3	+1

정원) ①·② (생 략)	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 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은 행정 안전부, 1명(4급 또는 5급 1명) 은 문화체육관광부, 1명(4급 또 는 5급 1명)은 보건복지부, 2명 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은 고용노동부, 1명(4급 또는 5급 1 명)은 여성가족부, 1명(5급 1명) 은 중소벤처기업부, 1명(4급 또 는 5급 1명)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 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.	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 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행정안전부, 1명 (5급 1명)은 문화체육관광부, 1 명(5급 1명)은 보건복지부, 2명 (5급 2명)은 고용노동부, 1명(5 급 1명)은 여성가족부, 1명(5급 1명)은 중소벤처기업부, 1명(5 급 1명)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 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8